경주시 공고 제2023-2284호

공 고

「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호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6월 30일

경 주 시



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○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관리자의 책무 규정 개정 (안 제3조)
- 나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개정 (안 제4조)
- 다.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 신설 (안 제4조2)
- 라. 규모 미만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7조)
- 마. 그 밖의 자구정비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)
- 라.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신설 (안 별지 제1호서식)
- 3. 예고기간 : 2023. 6. 30. ~ 7. 20.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20일(목)까지 경주시장(참조 : 환경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주소 : [38102] 경주시 양정로 260(동천동, 경주시 환경과)

(전화 : 054-779-6378, FAX : 054-760-7415)

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(www.gyeongju.go.kr) "입법예고"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의	 견	н]	고

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 제목 "(공중화장실등 설치·관리자의 책무)"를 "(설치·관리자의 책무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유지·관리하고,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, 최적의 시설 상태"를 "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"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"영" 이"를 ""영"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관리시설"을 "관리시설 및 그 밖에 그림, 사진 화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(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 시설물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장이 설치 · 관리하는 개방화장실

제4조의2(안전관리 시설 설치)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 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관리자로 한다.

- 2.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(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)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경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을 "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"제공할"을 "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편의위생용품 등을"을 "편의용품 및 내부 시설물 수리비, 관리운영비, 그 밖의 비용 등의 일부를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수준, 접근

성,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 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의 제목 "(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)"을 "(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관리방법"을 "관리기준"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)"을 "(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관리방 법"을 "관리기준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"별지 제1호서식"을 각각 "별지 제2호서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설치·운영 변경신고서"를 "변경신고서"로, "별지 제2호서식"을 "별지 제3호서식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에 따라"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 호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중화장실 관리카드

						전	경 사	진							
소 자	내 지							화장	실	명칭					
지 역	구분											소 속			
설 치 및 관리주체	설치주체						<u> </u>			관리책임 공 무 원	- -	직 급			
관리주체	리주체 관리주체					년 도						성 명			
관 리	나 인			(전	화	번호	:)	월	평균	0 -	용인원			
		부지 (m²)	화장 면적	닐	대변기		수	소변기		기 수	-	대변기	기유형	사용	용료
규	모		(m²)	I	람	여	장애인	성인	용	유아	용	동양식	서양식	유료	무료
편의		세면 시설	난방 시설	냉 ! 시 실	호	··풍기	화장지 (자동 판매기) 日[-	누	수건 (에 아 타올	 	탈취제 방향제)	청소도 내부	구함 외부	기티
내역															
시설관리 내역		연월약	일 원 사	리 항	금 (천	액 원)	연월일	관리 사항	니 하 5	금 (천·	액 원)	연월위	일 원 사	리 항 (?	급 액 천원)
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		지정 여부	_	 비성 (설치	 낭벨 : 수)	 CC (설치	TV 수)							
		<u> </u>		. —	<u> </u>	-								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중화장실등 설치・관리	제3조 <u>(설치·관리자의 책무)</u>
<u>자의 책무)</u> 공중화장실, 개방화	
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	
및 유료화장실(이하 "공중화장	
실등"이라 한다)을 설치・관리	
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	
깨끗하고 위생적으로 <u>유지·관</u>	<u>유</u> 지 • 관
리하고,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	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
하며,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	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
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
	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
제4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	제4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	
시행령」(이하 <u>"영"이</u> 라 한다)	<u>"형"이</u>
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	
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	
호와 같다.	<u>.</u>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	3
내에 손 건조기, 종이 수건, 청	
소도구함, <u>관리시설</u> 등을 설치	<u>관리시설 및 그 밖</u>
할 수 있다.	<u>에 그림, 사진 화분</u>

4. 그 밖에 그림, 사진, 화분 등4.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설치할 수 있다.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

<신 설>

- 4.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(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 시설물)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4조의2(안전관리 시설 설치)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・관리자로 한다.
 - 1.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개방 화장실
 - 2.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제2조제6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 장실(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 한다)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) 지 경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<신 설>

제7조(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 정 정) ①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항상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 운영시간에만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
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
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
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제5조(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)
① <u>시장</u>
·.
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
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
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
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
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
시하여야 하며, 민간시설 공중
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
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
를 대여할 수 있다.
제7조(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
정) ①
-1

② (생략)

<신 설>

③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· 관리하는 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 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관리방법) ① (생 략)

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 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 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 의 시설수준, 접근성, 안전성 등 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
----- 편의용품 및 내부 시설물 수리비, 관리운영 비, 그 밖의 비용 등의 일부를 -

⑤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 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 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 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 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제8조(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
(2) -----

화장실의 <u>관리방법</u>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- 제9조(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)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, 관리방법은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.
- 제10조(유료화장실의 설치·운영 신고)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· 운영하려는 자는 <u>별지 제1호서</u> 식의 유료화장실 설치·운영 신 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 는 날의 15일 전까지 <u>별지 제1</u> 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·운 영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·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·운영 변경신고 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

<u>관리기준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
<u> 관리기준)</u>
관리기준
제10조(유료화장실의 설치・운영
신고) ①
<u>별지 제2호서식</u>

②
별지 제2
호서식
③
<u>변경신고서</u>

한지 확인한 후 <u>별지 제2호서식</u> 의 유료화장실 설치·운영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제11조(위탁관리 등) ① (생 략) 제11조(위탁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유지·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 ----